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61

발의연월일: 2020. 7. 21.

발 의 자: 박찬대·조승래·강선우

신동근 • 정일영 • 이성만

권칠승 · 정성호 · 김교흥

김정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대학의 정상적인 수업 및 학교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런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각 대학에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교직원·학생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 교직원 위원이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관련 전문가의 선임권한을 가지고 있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대학이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적 저하 및 학교시

설의 이용 제약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을 긴급하게 지원하여 학생 등록금의 면제·감액 또는 환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등록금 산정 시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금심의위원회의교직원 위원을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등 일부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난 상황을 고려한 대학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제7조의2 신설 및 제11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긴급재난 지원) ① 국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 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적 저하 및 학교시설의 이용 제약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감액 또는 환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항 후단 중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를 "10분의 3 이상, 교직원 위원은 10분의 5 미만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협의하여 선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금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등을"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수업의 질적 저하 및 학교시설의 이용 제약 등을"로 하고, 같은 조제6항 후단 중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를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로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위원회"를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설치·운영"을 "설치·운영, 제5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등록금 산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후 위원을 선임할 당시 제11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관련 전문가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11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총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연 앵 <u><신 설></u>	제7조의2(긴급재난 지원) ① 국가 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적 저하 및 학교시설의 이용 제약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가 등록금을 면제・감액 또는 환급하는 데 에 필요한 재원을 긴급하게 지 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 지 원의 대상・범위・방법・절차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 원회) ①・② (생 략)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 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④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제3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한다.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⑥ -----

10분의 3 이상, 교직원 위원은
10분의 5 미만으로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
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
하여 선임한다.
4 <u>E</u>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금심
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
한 수업의 질적 저하 및 학교시
설의 이용 제약 등을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따라야 한다.

⑦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⑨ (생략)

①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 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u>설치</u> ·운영 및 제9항의 행정적·재 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u>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u>		
,		
⑧・⑨ (현행과 같음)		
①		
<u>설</u>		
<u>치·운영, 제5항의 등록금심의</u>		
위원회의 등록금 산정		